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 령 군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0 3
----------	-------

제출일자 : 2000년 8월 21일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사유

2000. 2. 9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행위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 숙박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나아가 2000년대 살기좋은 고령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락 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 규정(안 제3조)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의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인 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인 지역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그 지역 주민에 한하여 음식점설치만 허용.

3. 내용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 관계근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규정

3. 내 용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과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등) 준농림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지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과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미터 이상인 지역 및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인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지역
3.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4.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인 지역
5. 도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이외의 지역 및 군도 경계선으로 부터 떨어진

거리가 5미터를 초과하는 지역(군도 미개량 구간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2.5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단,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인 지역

6. 다만 1호와 3호 내지 5호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중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그 지역 주민에 한하여 음식점 설치만 허용한다.

제4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도시미관, 환경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